

영등포구의회
제 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0.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67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에 대해
중복·반복되는 조항 정비(안 제10조 수정, 안 제10조의2 삭제)
- 나.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20조제2항)

- 과태료를 부과한 후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5. 19. ~ 6. 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현 조례의 조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1)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안 제20조제2항을 삭제함.

- 해당 조항의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써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침익적 행정행위로 환경부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조항과 제10조의2(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항에 중복되는 사항을 안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로 정비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

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1의3.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7.20.>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

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2010.6.28., 2011.1.21., 2011.9.7., 2013.5.28., 2014.1.14., 2016.1.19.>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 및 점검·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삭제 <2008.7.29.>

다. 삭제 <2008.7.29.>

- 라. 삭제 <2008.7.29.>
- 마. 삭제 <2008.7.29.>
- 바. 삭제 <2008.7.29.>
- 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 아.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
-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 차.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마.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 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아.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 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 차.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 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 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 파.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 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 거.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 너.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 더.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총당 및 반환
- 러.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 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 버.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 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 어.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총당 및 반환
- 처.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3.5.28., 2016.1.19., 2016.7.19.>
-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5.28.>

1의5. 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의6.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제4항·제7항·제11항 및 제1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차.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카.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타.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파. 삭제 <2008.7.29.>

하. 삭제 <2008.7.29.>

거. 삭제 <2008.7.29.>

너. 삭제 <2008.7.29.>

더. 삭제 <2008.7.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4., 2016.1.19., 2016.7.19.>
 -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분석 등
 -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의 평가
 -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분석 수수료의 고시
 - 사. 삭제 <2016.7.19.>
-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